● 제314회 ●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68)

2022. 9. 22 .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68

Ⅰ. 동의안 개요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22년 08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09월 02일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로,

나. 장애인 보조기기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에 재계약하여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동북,서남)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12.31. (3년)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676,681천원(’ 22년 예산안 기준)

- 동북(332,956천원), 서남(343,725천원)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사)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본 위탁사무는 보조기기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과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 사업 수행 능률성을 필요로 함

–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가 용이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활용을 촉진하고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임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보조기기 상담·평가 사례관리 사업

○ 보조기기 보급, 대여 사업

○ 보조기기 맞춤제작, 개조, 수리 사업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 사업

○ 홍보 및 전시체험장 운영 사업

○ 지역 연계 프로그램 및 전문성 향상 사업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보조기기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1]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2 동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보조기기센터의 민간위탁 필요성 및 법적근거

○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음[2].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보조기기를 “장비, 도구, 설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으로 신체 기능 및 구조를 보호, 지원, 훈련, 측정, 대체하기 위하여, 혹은 손상, 활동제약, 참여제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 노인 등이 참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 보조기기는 장애인이 가지는 손상을 단순한 기기를 사용하거나 공학기술을 이용하는 지에 상관이 없이 불편한 부분을 제거하거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2.**

나 보완하여서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일의 영역에서 목적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함.[3)]

○ 한편, 국회에서는 2015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보조기기법)」이 통과되고,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동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4)]

○ 동법 제14조에서는 광역시장이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5)]

○ 또한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7조[6)]에서

---

3) 박국흠(2020).「장애인기업 보조기기 지원 필요성 연구」.장애와 고용 30(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현황

○ 서울시에서는 보조기기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체계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지원 (제작, 제조, 임대, 수리 등) 하여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강동·용산센터를 2008년에 최초로 개소하였으며, 2022년 현재 권역별 4개의 보조기기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표>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현황

센터명	위탁법인	관할 자치구	인력	위탁기간(개소일)
동남	(재) 푸르메	강동, 광진, 성동, 송파, 강남, 서초	6명	'21.5.1.~'24.4.30. ('08.12.)
동북	(사)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성북, 동대문	6명	'20.1.1~'22.12.31. ('14.8)
서남	(사) 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6명	'20.1.1~'22.12.31 ('08.12)
서북	(재) 푸르메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 용산, 중구	6명	'21.5.1.~'24.4.30. ('18. 5.)

6)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객관적 경험을 보유한 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 동북, 서남센터 민간위탁 운영현황 및 주요실적

○ 금번 상정된 동의안은 4개의 센터 가운데 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재계약이 도래한 동북, 서남센터에 대해서 사무를 의회에 동의받고자 제출된 것임.

<표>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동북, 서남센터) 민간위탁 추진경과

구분	1차	2차	3차
위탁기간	'14.8.1.~ '16.12.31. (2년) ※ 시의회 동의 : '14.3.4.	'17.1.1~'19.12.31. (3년)	'20.1.1.~'22.12.31. (3년)
선정방법	공개모집	재계약	재계약
수탁법인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 보조기기센터에서는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맞춤 제작, 개조, 수리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보급하고 센터 이용 등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예산과 전년도 주요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동북, 서남)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동북	332,956	242,956	30,000	60,000
서남	343,725	253,725	30,000	60,000

<표>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동북) 연도별 주요 서비스 실적

연도	지표	계	상담·평가 및 시험적용	임대 및 현장적용	후원연계	맞춤제작 및 개조	사례관리	AAC 서비스
2020	목표량(명)	58,540	1,850	54,644	344	612	720	370
	실적(명)	61,128	3,013	56,879	285	148	696	107
	달성률(%)	104	162	104	83	24	96	28
2021	목표량(명)	56,820	1,650	54,000	246	168	600	156
	실적(명)	80,116	2,332	76,393	186	254	825	126
	달성률(%)	140	141	141	95	151	137	81
2022. 7월말 기준	목표량(명)	57,846	1,662	55,200	252	168	480	84
	실적(명)	51,739	1,796	49,059	8	151	668	57
	달성률(%)	89	108	89	3	90	139	68

<표>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서남) 연도별 주요 서비스 실적

연도	지표	계	상담·평가 및 시험적용	임대 및 현장적용	후원연계	맞춤제작 및 개조	사례관리	AAC 서비스
2020	목표량(명)	54,264	2,052	50,440	378	432	659	303
	실적(명)	43,155	1,767	40,247	257	321	449	114
	달성률(%)	79	86	80	67	74	68	37
2021	목표량(명)	36,967	1,704	34,200	252	264	324	223
	실적(명)	52,980	2,304	49,224	325	347	557	223
	달성률(%)	143	135	144	129	131	171	100
2022. 7월말 기준	목표량(명)	47,216	1,944	44,280	40	312	345	295
	실적(명)	32,750	1,181	30,792	40	215	345	177
	달성률(%)	69.4	60.8	69.5	100	68.9	100	60

3 종합의견

○ 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보조기기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기서비스 제공과 품질

관리에 대한 전문적 사업수행 능률성이 필요한 분야임.

○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며,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전문적인 기관에 보조기기센터 운영을 위탁해 운영하는 것은 법으로도 규정된 필요한 사무임.

○ 또한,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보조기기센터의 역할 역시 더욱 강조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해당 사무의 경우 사무위탁을 시작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동일 기관이 수탁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민간위탁은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으나, 동일 기관에 장기위탁시 공적인 사명감 부족, 프로그램 개발 저조 등의 측면이 나타날 우려도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제시된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중 시민만족도 조사, 의사소통 등과 같은 개별지표 평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참고해 공모를 통한 위탁기간 선정시 엄격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향후 철저한 감독을 통해 해당 사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문 의 처
도미화 입법조사관 (02-2180-8147)